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타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37, 2022.03.30

■ 질 의

- (질의1)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 질 의

- 1)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질의자가 증여받아 계속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위 사실관계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질의자가 소유하는 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질의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869, 2021.12.31

■ 질 의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 회 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1865, 2022.03.23

■ 질 의

- 질의자는 (주)○○○○○○○○(이하 “법인”)의 주주이자, 사용인으로 자녀에게 법인 주식 50,000주를 증여함

질의

- 질의자가 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 질의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30% 출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